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1
----------	-----

2022년 9월 2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8월 26일, 남궁역 의원 외 41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남궁역 의원]

가.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 등의 책무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7조)
-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1조)
-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2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피재황]

가. 개요

- 본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도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재 서울시의 야생생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이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음.

'22년 6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본 제정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목적과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적절한 조치임.

〈조례안 구성 및 주요 내용〉

장(제목)	내 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시민 협력 등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보호계획 수립, 보호종 지정, 보호대책, 행위제한, 허가의 취소 등
제3장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보호계획, 행위·출입제한, 철새보호구역의 보호 등
제4장 (야생동물 질병관리)	야생동물 구조·치료, 서식지 야생동물 질병관리 등
제5장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피해 실태조사 등
제6장 (시민참여)	시민에 의한 야생생물보호, 야생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지원, 표창, 야생생물 보호 교육 및 홍보 등
제7장 (보칙)	권한의 위임

- 세부적으로 제1장 총칙은 해당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총칙에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등의 규정을 두는 등 본 조례안의 체계는 무리 없이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지정을 비롯하여 질병관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서울시가 설치한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물 허가 이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와 보호를 위한 조치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임.

최근 야생 조류가 투명방음벽이나 건축물 유리창에 충돌하거나 양서류·파충류가 콘크리트 인공수로에 추락하여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국립생태원, 2018)〉

구 분	조류충돌 피해량	평균 피해량	비고
건물 유리창	765만 개체/년	건물 1동당 1.07 개체	국내 건물 전체 수 7,126,526동(2017 기준)
투명 방음벽	23만 개체/년	방음벽 km 당 163.8 개체	국내 투명방음벽 전체 길이 $1,421 km$ (2017 기준)

<야생동물 피해 저감을 위한 법령 개정 주요 내용>

I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5호, '21.3.22.)

- 조류충돌 방지기능이 있는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양한 방안 강구

II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6.10.)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방향으로 인공구조물 설치 · 관리
-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실시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피해방지 조치 마련
- 피해방지 조치 이행 비용은 국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동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조성하는 신규 인공구조물의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야생동물 충돌 피해와 저감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야생동물 충돌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인지하고 본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공구조물 건축·조성 시 자연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 야생생물”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2.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관련 정보·기술 등을 교류·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법인·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야생생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협력)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제6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보호 야생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種)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및 고지대 등의 일정 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종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특성
6.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보호 야생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①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 채취, 방사, 이식, 보관, 훼손 및 고사시키는 행위
2.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뒷, 올무, 그물, 함정 및 그 밖에 야생동·식물을 포획·고사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포획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4항에 따른 보관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학술연구 또는 보호 야생 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
· 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 야생 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경우
 9.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10.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야생생물이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될 당시에 해당 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보호 야생 동·식물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 관리

제1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 변경 등) ①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1. 희귀 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시장은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 ·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정 ·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 · 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계획)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안의 야생생물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

3.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구역 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생태계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 및 야생생물 변화관찰의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태계 및 야생생물 변화관찰의 내용·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하천·호수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중감을 가져오는 행위

2. 토석의 채취 및 오염

3. 수면의 매립
 4. 불을 놓는 행위
 5.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사전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허가등을 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녹색 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옮기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4조(출입제한) ①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2. 시장이 인정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행위
3.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 법규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및 기간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5. 출입제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혼손 등에 대한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따른다.

제17조(철새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① 시장은 철새도래지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집단도래지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철새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야생동물 질병관리

제18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시장은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제20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시장은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류 이동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시민참여

제22조(시민에 의한 야생생물보호) ① 시장은 산이나 하천 및 야생생물 보호 지역·철새보호구역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을 지정하여 이를 보호·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야생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야생생물보호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4조(표창) 시장은 야생생물보호 및 이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야생생물 보호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자치구, 교육기관, 자연환경보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및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에 대하여는 한강사업본부장 및 공원여가센터장에게 각각 이를 위임한다.

1.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행위중지·원상회복 및 상응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4.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에 대한 청소 및 유해동·식물의 제거 등 제6조, 제12조에 따른 세부계획 및 보호계획 등에서 정하는 사항
5.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